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나5376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퍼م

담당변호사 조준현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광

담당변호사 이중광

변 론 종 결 2022. 10. 20.

판 결 선 고 2022. 11. 17.

제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0가단273896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18. 6. 18. 체결된 상계계약을 99,489,53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99,489,5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18. 6. 18. 체결된 상계계약을 99,489,53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9,489,5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설 유지 및 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청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재단법인이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센터 2층 부분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F체험관’(이하 ‘이 사건 체험관’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5. 8. C와 사이에 이 사건 체험관의 구조보강 및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800만 원, 공사기간 2017. 5. 8.부터 2017. 6. 21.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6. 19.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C은 원고에게 2017. 5. 26. 2,000만 원, 2018. 7. 3. 500만 원, 2019. 8. 19. 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7,8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이하 원고의 C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그 무렵 C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원해주겠다고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원약정'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11.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체험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7. 11. 1.부터 2020. 10. 31., 연 차임 69,936,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C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8. 6. 1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3년간의 차임 209,808,000원과 피고가 이 사건 지원약정에 따라 C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조보강공사비용 209,486,233원을 정산처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정산'이라 한다), 이에 따라 C은 피고에게 정산금 명목으로 321,767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와 C은 2018. 6. 18.경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체험관 운영기간연장 및 장소사용료 등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센터 F체험관

운영기간연장 및 장소사용료 등에 관한 약정서

제2조(위탁기간) 본 시설물은 한시적 가설건축물으로써 구조안정상의 문제 등으로 구조안전보강 공사를 실시한 바, 운영사가 공사로 인하여 운영하지 못한 약 1년간의 사업기간을 감안하여 협약 제3조의 위탁기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① 본 시설물의 운영기간은 2016. 12. 1.부터 강남구가 피고에 위탁한 기간은 2019. 5. 31.까지로 한다. 단, 향후 피고와 강남구의 운영위탁이 갱신될 경우에는 강남구와 피고의 협의하에 2020. 10. 31.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와 공사비지급에 관하여) E센터 2층 F체험관은 도시계획시설상 한시적 철근골조(H빔) 가설물으로써, 안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안전진단 및 구조안전보강공사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른 공사비를 C이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C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와 위 지급된 공사비를 상계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납부) 1. E센터 2층 F체험관 장소사용료 납부는 일시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연 4회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단, 분할납부 시 정기에금 이자 1.0%를 추가 납부한다.

2. F체험관 사용료 납부는 F체험관 개관 시점인 2017. 11. 1.자로 한다.

[인정근거] 다통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정산사실을 늦어도 2019. 7. 22.경 알고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0. 10. 20. 이 사건 소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7. 22.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피고가 구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C과 계약하고 선지급하면 추후 구청 예산으로 상계처리한다는 약속이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원고가 그 무렵 이 사건 정산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채무자인 C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금 채권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채권을 상계하기로 하는 상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같은 상계계약은 원고 등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상계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 그 상당액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채무자가 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인데(민법 제406조 제1항), 원고는 C과 피고 사이에 상계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그 상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산은 채권자인 피고의 단독행위인 상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C과 피고 사이에 상호 채무를 면제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새로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C의 법률행위인 상계계약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18. 1. 30.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지원약정에 따른 채권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채권을 상계처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회계법인에게 F체험관 재산가액 및 임대료 산출을 의뢰하여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차임 채권이 209,808,000원인 사실을 확정하였고, C으로부터 정산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이 사건 지원약정에 따라 C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209,486,223원인 사실을 확정하였다.

② 이 사건 약정 제4조는 피고가 C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임과 피고가 C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를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약정 제5조는 C은 피고에게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3년분의 차임 채권 전액을 2017. 11. 1.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정산 및 위 약정 체결 당시 피고의 차임채권과 C의 이 사건 지원약정에 따른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었으므로, 피고는 C의 동의 없이도 단독행위로서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③ 원고는 2018. 6. 18.경 C과 피고 사이에 상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같은 날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차임채권과 이 사건 지원약정에 따른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일 뿐, C과 피고 사이에 상호 채무를 면제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과 피고 사이에 상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석동, 판사 김현주, 판사 임효빈